

대구광역시달서구 어린이·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

2024. 7. 19.

복지문화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안 건 명: 대구광역시달서구 어린이·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재위탁 동의안
- 제 출 자: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(위생과장)
- 제출일자: 2024. 7. 5.(금)
- 회부일자: 2024. 7. 5.(금)
- 상정 및 의결: 제306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문화위원회(2024. 7. 19.)

2. 제안이유

- 달서구 어린이·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기간이 2024. 12. 31.로 만료됨에 따라 「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」, 「노인·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근거하여 어린이·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·관리를 위하여
- 「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」 제6조에 따라 의회에 동의를 구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가. 위탁시설현황

시설명	소재지	규모	現 위탁현황		비고
			위탁기간	수탁기간	
달서구 어린이·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	달구벌대로 1095 (신당동)	3층 320호 (230.06㎡)	2022. 1. 1 - 2024. 12. 31.	계명대학교 산학협력단	

나. 위탁개요

○ 위탁사무

- 어린이·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전반
- 어린이·사회복지 급식소 위생·안전·영양관리 순회방문 지도
- 식단·표준 레시피 개발 및 지원
- 대상별(어린이, 노인·장애인, 원장, 조리원 등) 급식 식생활 교육 등

○ 위탁기간 : 3년(2025. 1. 1. ~ 2027. 12. 31.)

○ 수탁자 선정방식: 공개모집 후 수탁기관심사위원회 심사·선정

※ 수탁심사위원회는 전문가, 구의원, 공무원 등 6명에서 9명으로 구성

4. 관련근거

- 「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」 제21조,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
- 「노인·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 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5조
- 「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」 제4조에서 제7조까지
- 「대구광역시달서구 어린이·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」 제5조

5. 전문위원 검토의견 요지

- 본 동의안은 「대구광역시달서구 어린이·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」에 따른 달서구 어린이·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위탁기간(2022년 1월 1일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)이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을 위하여 「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」 제6조에 따라 의회에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
- 어린이·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는 영양사가 없는 소규모 어린이집과 사회복지시설 등 급식 사각지대에 양질의 급식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재 314개(어린이집 228개소, 유치원 46개소, 아동복지시설 등 40개소) 기관이 등록되어 있고, 2024년 하반기 노인·장애인 복지시설 35개소 이상 등록을 추진하고 있음.
- 어린이·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는 센터장 1명을 포함한 21명의 직원이 3개팀(운영·기획·영양)으로 운영하고 있으며, 국·시비 보조사업으로 2024년 9억 4,000만원(구비 2억 3,500만원 포함)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음.
- 2024년 6월 정책자문위원회에서 민간위탁 적정성 사전검토를 거쳐 “적정의견”을 받은 바 있고, 공개모집 후 수탁기관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조례에 따른 기간 내로 위탁하는 등 본 동의안은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어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6. 질의·답변 및 토론 요지: “특이사항 없음”

7. 심사결과: 원안가결